

문 의	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	과 장 전현진 사무관 박성철	042-481-5460 042-481-5716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8년 12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12월 9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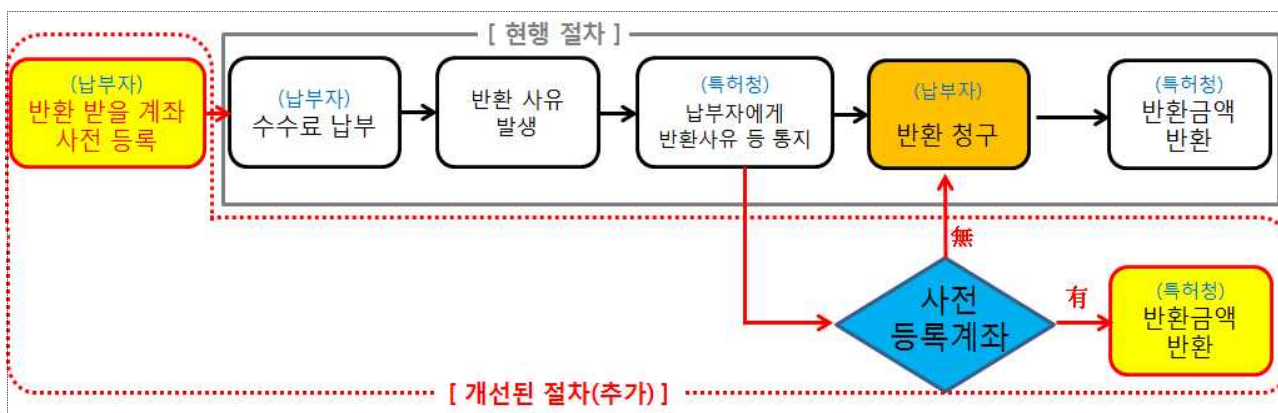
특허청,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- 2019년 1월 1일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. -

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해야만 반환하는 절차였으나,

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,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반환하게 된다.

[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]



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,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,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*해 주고 있으나,

* 반환사유 등 통지일로부터 11개월, 23개월, 35개월 경과시까지 반환금액을 찾아가지 않은 출원인을 대상으로 반환금액 등을 안내

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.

* (국고귀속금액) '12년 2.2억원, '13년 2.1억원, '14년 2.4억원 '15년 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

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(patent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(또는 서울 사무소)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.

한편,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(patent.go.kr)나 특허고객상담센터(☎1544-808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.

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“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 “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박성철 사무관(☎ 042-481-57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